

『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』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### 2. 제안이유

-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치매 등 노인성질환의 발병율이 높아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이 절실히 요구되어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병원위탁운영자(학교법인구미교육재단)로부터 구미시립 노인전문요양 병원 건립부지 및 건립비(일부) 기부채납을 수용하여 병원을 신축 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#### 【 사업개요 】

- 사 업 명 :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
- 사업위치 : 구미시 부곡동 산36-1번지 외 6필지
- 사업규모 : 건립부지17,598m<sup>2</sup> 연건평 4,988m<sup>2</sup>
- 신축예산 : 6,577백만원(국비 2336 도비 1,168 시비 2,073 운영자부담금1,000)

#### 【 취득재산 : 신축 및 기부채납 】

##### ☐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사업

- 토 지 : 7필지 17,598m<sup>2</sup>
- 건 물 : 4,988m<sup>2</sup>(연면적)
- 취득가액 : 6,916,586천원

□ 기부채납 : 사업부지 전부 및 사업비 일부 기부

- 토 지 : 7필지 17,598m<sup>2</sup>
- 기부채납 가액 : 1,339,586천 원
  - 토 지 : 339,586(공시지가 기준)
  - 현 금 : 1,000,000

#### 4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35조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
-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

#### 5. 검토의견

- 본 변경안은
  -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의 발병율이 높아 노인 전문요양병원 건립이 절실히 요구되어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병원위탁운영자로부터
  -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써 건물 1건 및 기부채납 2건 입니다.
- 주요내용은
  - 구미시 부곡동 산36-1번지 일원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건물 4,988m<sup>2</sup>를 취득하고
  - 병원위탁운영자인 학교법인 구미교육재단으로부터 운영위탁 조건에 따른 사업부지 전부인 구미시 부곡동 산36-1번지의 6필지 17,598m<sup>2</sup>와 건립비 10억원을 기부채납하는 것임